

2008년도 특별회계감사 보고서

우리 노동조합(이하 조합) 규약 제53조 제5호¹⁾, 2008년 8차 중앙위원회 결의, 2008년 1차 임시대의원 결의에 의거하여 2007년 우리노조 통합이후의 집행 내역에 대한 특별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□ 감사자 및 감사 대상기간/피감사자

- 감사자 : 김근대 회계감사, 정달영 회계감사²⁾
- 감사 대상기간 : 2007. 3. 27 ~ 2008. 4. 18
- 감사일 : 2008. 3. 26, 2008. 4. 18
- 피감사자 : 김근태 사무처장, 신윤실 총무부장

□ 참고인 조사

- 참고인 : 박용석 조합원(현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), 이광민 조합원
- 조사일 : 2008. 4. 21

□ 감사 중점사항

- 우리노조 출범이후 부적정 집행 내역 점검

1) 우리 노동조합 규약 제53조 5.나. 대의원 또는 중앙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.

2) 지청윤 회계감사는 본 회계 감사에 본인이 감사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함에 따라 감사자에서 빠짐(첨부 자료 1차 특별 회계감사 주요 경과 및 10차 중집 자료 참고)

□ 주요 감사결과

○ 사무처장의 의도적 감사 방해 및 회피³⁾

- 1차 특별회계 감사 회피 : 회계 규정상 회계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음에도⁴⁾ 회계감사 실시 공문 요구 및 수석위원장 결재에게 보고 및 결재 라인 등을 이유로 회계 관련 서류 금고 은닉 후 자리 이석으로 회계 감사 방해
- 2차 특별회계 감사 회피 : 사무처장이 특별 회계감사 일정을 공문으로 통보를 요청에 따라 특별 회계감사 일정을 7일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나, 2007년 및 2008년 모든 회계 관련 서류를 금고에 은닉 후 무단결근 및 연락 두절로 회계감사 방해
- 사무처장의 서류 금고 은닉에 따라 다수의 교통비(철도), 유류비, 교통카드 충전 등 교통비 이중청구의 의혹이 있는 내역은 확인하지 포함
- 신윤실 총무부장이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분에 대하여 사무처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, 이를 묵살하고 사무처장 위임 전결상의 상한 금액(50만원)을 초과한 집행분을 포함하여 총무부장의 사인이 되지 않은 지출결의서에 서명하는 등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에 사무처장이 동조 혹은 묵인함⁵⁾

○ 과다한 조합비 집행⁶⁾

- 실행예산 확정 전에는 일상적인 사항만 집행하여야 하나 소

3) 첨부 1차 2차 특별회계감사 주요 경과 및 회계감사관련 공문 참조

4) 회계규정 제5조(회계책임)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처장이 책임을 진다.

5) 첨부 신윤실 총무부장 진술서 참조

6) 첨부 2008 과다 집행내역 및 본부 사무실 운용비용 내역 참조

파, 금고, 비데 등 불요불급한 집기 구입(5건 4,989천원)

- 전임자 숙소 계약 후 일방적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및 중계수수료 손실(1건 1,200천원)
- 신성동 대전 본부 사무실 임차 계약 만료 전 궁동 현 사무실로 이전함에 따른 관리비 및 임차료 이중 지불(신성동 사무실 운용에 따른 손실 약 3개월, 1,322천원)

○ 조한육 전위원장 부적정 집행⁷⁾

- 2007년 말, 2008년 초 단란주점 및 성인노래방 등에서 부적정 집행 확인(6건 1,832천원)
 - 불광동 소재의 유흥주점 집행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박용석 조합원, 이광민 조합원을 직접 면담 및 전화 통화 면담 결과, 여성접대부가 상주하는 일명 단란주점으로 조한육 전위원장과 참고인 2명이 같이 있었고, 여성접대부는 동석하지 않았으나 여성 사장이 같이 1차 술자리에 있었으며 2차 술자는 만취로 잘 기억나지 않았음을 진술함(우리 연맹을 대표하는 연맹 사무처장인 박용석 조합원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)⁸⁾
 - 일산 소재의 유흥 주점 집행과 관련하여 우리 노조 제8차 중앙 위원회에서 조한육 전위원장이 “우리 노조 본부 상근 동지로 활동하던 한태현 부장의 퇴사를 만류하는 자리를 마련하다 보니 가게 되었다”는 진술을 한 바 있어, 1차 회계감사 및 2차

7) 첨부 법인카드 미회입 내역, 성인유흥주점 등 부적정 집행 내역, 법인카드 사용내역 불분명 집행내역 참조

8) 박용석 조합원, 이광민 조합원 참고인 조사서 참조

회계감사 시 관련자인 한태현 부장에게 확인하려 하였으나, 퇴사 신청 및 노조사무실 미출근, 전화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조사하지 못하였고, 조한육 전위원장에게는 공문으로 2차례에 걸쳐 부적정 집행 내역에 대하여 확인 후 해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답이 없음

여성접대부가 상주하는 성인주점에서 2명이 술을 먹고 단일 건으로 98만원을 결제하고, 이중 봉사료가 59만원인 점, 새벽 2시에 결제가 된 점으로 보아 문제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며, 법인카드의 부적정 사용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혹(성매매?)이 제기 되었으나 당사자들의 감사 회피로 확인하지 못함

- 2008년 4월 3일 대의원대회 해임 이후 집행 확인⁹⁾(1건 15.3천원)
- 2008년 1월에서 4월 3일사이 법인카드 사용 후 영수증 미제출 및 관련 내역에 대한 소명이 없는 집행 확인(60건 3,369천원)
- 2007년 본인이 회입하기로 한 집행 금액 미반납 확인(2건 68천원)
 - 2007년 하반기 정기회계 감사 결과에 불응

○ 불필요한 별도 집행 통장 개설을 통한 회계 불투명성 심화¹⁰⁾

- 총무부장이 관리하던 통장을 회수하고 별도 하나은행 통장(2008. 3. 5개설)을 개설하여 불필요한 수수료(32건 62.5천원)가 발생하였으며, 국민은행 조합비 통장과 하나은행 통장 모두를 확인해야만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의 불투명성이 심화되었음

9)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의 적정성 여부는 추후 판단이 요구됨

10) 첨부 2008년 3월 월계표 참조

□ 종합의견 및 조치 요구사항

- 조한육 전위원장의 2차례 성인주점 사용을 포함한 400여만원의 부정적 집행, 특별회계감사 불응, 정기 감사 지적사항 미 이행 등에 대한 별도 징계 등 시정조치를 요구함 【규약 제85조(징계 사유) 라. 해당, 회계규정 제17조(집행의 원칙) 위반】
- 조한육 전위원장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 및 사용 내역이 없는 집행 내역에 대해 2회에 걸친 소명요구에도 소명이 없는바 환수 조치를 요구함 【회계규정 제17조(집행의 원칙) 및 제26조(지출증빙) 위반에 따른 환수】
- 조합 규약에 의거한 대의원 대회 및 중앙위원회 결의, 회계감사의 특별 감사 요구 방해 및 회피하고 조한육 전 위원장의 부적정한 집행을 방조 또는 은폐하려한 김근태 사무처장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구함 【규약 제53조(권한과 임무) 4. 마 및 5.나 위반 또는 해태, 규약 제85조(징계사유) 라. 에 해당, 회계 규정 제5조(회계책임) 해태】
- 사무실 이전, 전임자 숙소 계약 취소에 따른 조합비 손실의 책임이 있는 사무처장에 업무 태만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함 【회계 규정 제8조(가예산, 경정예산) 위반】
- 조한육 전위원장과 유흥주점에 동석한 것으로 진술한 우리 연맹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용석 조합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
2008년 5월 7일

특별회계감사위원 김근대

특별회계감사위원 정달영